##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59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이규민·홍기원·김홍걸

허 영ㆍ서삼석ㆍ양정숙

양기대・야전비・윤재갑

박성준 · 정청래 · 신정훈

서영석 · 오영환 의원

(14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용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및 육 아 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의견도 제시 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7, 제37조 및 제3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양립 실태"를 "양립,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 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 실태 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0세"로, "2학년"을 "4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근로자는 최소한 6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0세"로, "2학년"을 "4학년"으로 한

다.

제19조의4제1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3회까지"로 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제4항"을 "제19조제4항"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으로 한다.

③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			
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u>양립 실태</u> 를 파악	<u>양립,</u> 육아휴직 신청과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이행 실태		
를 실시하여야 한다.	<u>.</u>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		
	청과 이행 실태 조사는 3년 마		
	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		
	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u> &lt;신 설&gt;</u>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④</u> 제1항 및 제2항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19조(육아휴	직) ①	사업주	는 근
로자가 만 🤉	8세 이경	하 또는	초등
학교 <u>2학년</u>	이하의	자녀(약	입양한
자녀를 포힘	한다.	이하 깉	다)를
양육하기 위	하여 후	후직(이	하 "육
아휴직"이라	한다)	을 신기	청하는
경우에 이틑	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력	청령으로	크 정하	는 경
우에는 그러	하지 ㅇ	·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u>한다</u>.

####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u>8세</u>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이 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9조(육아휴직) ①
<u>10</u> 4]
<u>4</u> 학년
,
,
②
하되, 근로자는 최소한 6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u>10세</u>
<u>4학년</u>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 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7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3회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사 업주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 적인 기준 · 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7조(벌칙) ① ② (현행과 같 음)
  - ③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을 위 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 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4	사업주:	가 다음	음 각	호의	의 어
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빈	행위
를	한 경우	우에는	500₹	<u></u>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다	-		

- 1. ~ 3. (생략)
-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 6. (생략)

- 제39조(과태료) ① · ② (생 전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의2. ~ 8. (생 략)

④ (생 략)

<u>(5)</u>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4항육
아휴직
_ <del></del>
5. · 6. (현행과 같음)
세3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